

# 2026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6.6.22(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사업개요

### □ 목 적

-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 □ 대 상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 모집분야 : ①물·수질, ②기후·대기, ③자원순환·폐기물, ④기타환경

□ 지정규모 : 10개 사 내외 신규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 □ 신청자격 제외 및 제한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기후부 고시 제2026-123호)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③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④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⑤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⑥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정신청 제한**

①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업·영업·사업정지·사용중지·등록취소·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②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③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④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⑤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⑦ 재지정을 연속하여 2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브랜드 제고**

- 기후에너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수여(유효기간 5년)
-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홍보
- 우수환경산업체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 해외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참가지원
- 언론보도(기획기사), 영어 방송 제작 및 송출
-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연결 지원
-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 및 기술임치 지원

 **인센티브 제공**

- (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R&D) 평가 신청 가점
- (금융)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점
- (입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신청 가점
- (사업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추진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가점
- (해외진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협회 추진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점
- (고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

※ 가점은 해당사업 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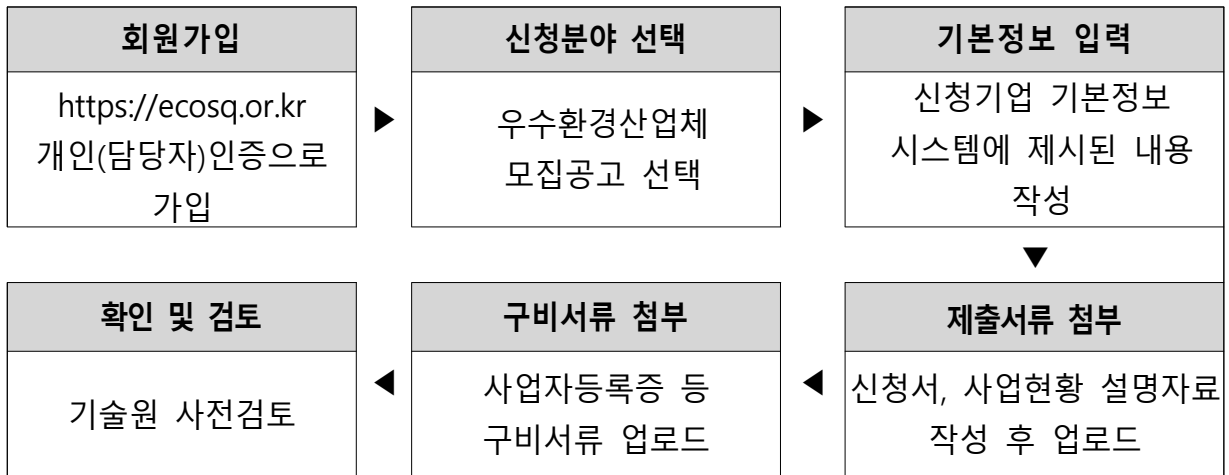
### 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5.21.(목) 09:00 ~ 6.22.(월), 18:00

□ **접수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현황 설명자료 1부 및 추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요망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미제출 시 가점 부여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는 발급한 일자 내 유효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함

## 4

## 평가절차

### □ 선정절차 :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구분	기술원, 환경기업	기술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기후부
내용	▶ 사업공고 ▶ 신청(온라인)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 자격요건 ⇨	▶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 현장조사 ⇨	▶ 지정심의 ⇨	▶ 우수환경산 업체 지정서 발급
일정	5~6월	6월	7~8월	8월	9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 ②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사업실적, 기술력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3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가점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기후부 소관) 성공(우수 등급)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최대 10점)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사업실적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5	20
	우수성	·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5	
	수출비중	·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0	
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현장적용성	· 기술의 현장 적용성 단계	10	20
	기술보호수준	·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10	
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시장전망	· 시장 확대 가능성	10	20
	경쟁력	· 국내외 거래처 확보 정도	10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증가율	· 최근 2년 평균 고용 증가율	5	20
	고용현황	·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5	
	가능성	· 고용창출 의지 및 실행여부 등	10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발전성	· 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	5	20
	인프라	· 연구개발 인력, 장비, 시설 현황	5	
	가능성	· 경영자 전문성 및 역량 등	10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기업에 대해 실시

③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 여부 조사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선정'기업에 대해 실시

④ **(지정 심의)** 현장조사 대상기업 중 우수환경산업체 '적합' 기업을 최종 선정

**5**

**문의처**

구 분	부 서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회원가입 및 로그인)	-	02-2284-1471
사업문의	기업육성실	032-540-2205

- 덧붙임
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재지정) 신청서
  2. 사업(경영·영업)현황 설명자료
  3. 지정 제외대상
  4. 심사위원회 평가표
  5. 가점기준
  6. 현장조사 평가표
  7. 지정심의 평가표
  8. 모집대상 참고사항(관련 법령)

우수환경산업체 [ ]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 ] 재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주요기술 및 주생산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환경산업체로 ([ ] 지정, [ ] 재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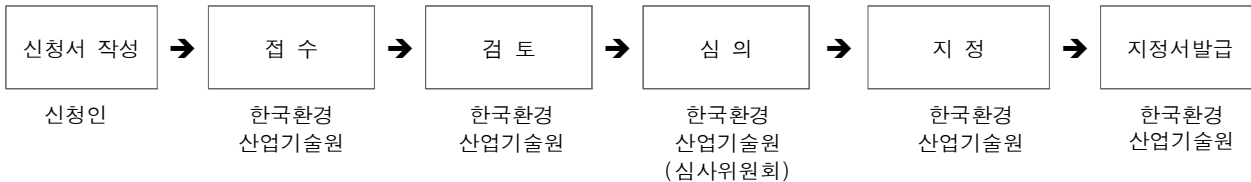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 사업(경영·영업)현황 설명자료

※ 제출하신 사업현황 설명자료는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 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 1. 신청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전화	
	상근 종업원		명		설립일	
	업 태				주요기술:	
	종 목				주요생산품:	
재무현황	당기 ('25)	자산총계		전기 ('24)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자비용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률	%
		이자보상률	%		이자보상률	%
	a.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e.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률		
	b.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f. 최근 2년 평균 부채비율		
	c. 최근연도 환경산업 매출액			g. 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비율		
	d. 최근연도 해외매출액			h. 최근 2년 평균 고용증가율		
고용현황	고용인원(a) ('25.4월말)	명	고용인원(b) ('24.4월말)	명	고용인원(c) ('23.4월말)	명

<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이자보상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 고용증가율 : (a-b)/b×100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당기)증가액 및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의 개발비·연구비·경상 개발비 합계액

## 2. 법인 연혁

설립 이후 주요 변경 연혁 (설립, 상호 변경, 대표 변경, 합병·분할·상장 내용, 수상 경험, 언론 보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참여기업 역량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 신청기업의 사업에 대한 개요·특징, 경영진 역량,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사업분야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 기술의 명칭 및 개요·특징, 기술의 완성도 및 우수성에 대한 현황 기술 *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형태, 특징에 대한 기술 및 관련시장에서의 진입정도 * 주력분야 기술 및 서비스 보유여부, 기술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현황 및 특허전담 인력 또는 조직보유 기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 주력시장의 성장성 및 확대가능성, 현재 관련시장의 경쟁성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제품의 국내 거래처 현황 및 해외 거래처 확보, 해외시장 진출정도 추진여부 기술 * 전체 사업 중 환경 분야 사업추진 실적 및 매출 비율 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환경분야 매출실적, 녹색제품 구매 또는 제조 판매 비율, 환경기술 적용 계약 건수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 기술·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전문성 및 역량, 사업 추진 및 경영 활동을 위한 전략수립 구체성 * 주력사업 확대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정도,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지원사업 수행 여부 *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참여기업 역량 자료는 최대 30page를 초과할 수 없음(Hwp, Word, PPT, PDF 등 가능)

#### 4. 환경산업 매출비율(신청일 기준 전년도 환경산업 매출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환경산업 매출					그밖의 매출	합 계*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기타 환경분야	환경산업 소 계		
매출액							
매출비율							

※ 환경산업 매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기준

\* 합계 : 환경산업 소계 및 그밖의 매출의 합

#### 5. 주요 환경산업 거래실적(신청일 기준 전년도 환경산업 주요실적)

건수	품 명	납 품 처	납 품 월	납 품 액
1				
2				
3				
.				
10				

\* 주요한 실적(납품액·납품처)에 대해 10건만 기재

\* 증빙서류 제출(세금계산서, 수출실적증명서)

#### 6.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현황(특허 및 실용신안 국내 등록, 해외 특허권 및 PCT 출원\*)

건수	유형	명칭	권리자 (PCT의 경우 출원인)	등록일 (PCT의 경우 출원일)	등록번호 (PCT의 경우 출원번호)
1	국내특허				
2	해외특허				
3	PCT출원				
.					
10					

※ 주요 기술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해외 특허권 및 PCT 출원에 한하여 최대 10건 이내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PCT 출원의 경우 국가진입기간(원출원일로부터 2년6개월)이 도과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특허전담인력 현황

번호	이름	직위	전공	학위	업무분야*
1					
2					
3					
.					
.					

※ 특허전담 인력이 포함된 조직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업무분야 : 특허전담 / 연구&특허 겸임 / 연구전담 중 택1

**7. 신청기업에서 받은 인증 내역(가점 기준 해당사항)**

건수	지정서	지정·인증기관	주무부처	유효기간
1				
2				
3				
.				
.				

\* 증빙서류 제출(유효기간 내 인증서, 지정서 등)

## 【구비서류】

목 록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청 홈택스
2.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인터넷 등기소
3.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예) 2025년, 2024년, 2023년	[필수] 국세청 홈택스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필수] 국세청 홈택스
5.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전년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1부. 예)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한국무역협회)	해당 기업에 한함
6.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전월말 고용보험 가입명부 1부 - 공고일 기준 전월말(전년·전전년) 가입명부 1부 예) '26.5월 공고 : '26.4월말, '25.4월말, '24.4월말	[필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7. 납품 실적 증빙서류 - 주요 실적 범위 내 최대 10개 증빙 * 증빙은 세금계산서에 한함	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 - 주요기술 범위 내 최대 10개 증빙, 지식재산 특허전담 조직도 또는 전담 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공문 등)	해당 기업에 한함
9. 인증서 등 가점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 기업에 한함
11. 환경 인허가증, 신고증(해당 분야별 관련서류 모두 제출)	해당 기업에 한함
12. 본사 및 공장 해당 소재지 시·군 등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률* 위반 여부 조회 공문 혹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예. 조회기간 : 2024.5.21.~현재) * 환경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약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련 제 법률	해당 서류 보유 시 제출
1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법 위반 사실확인서(예. 조회 기간 : 2023.5.21.~현재)	[필수]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 처리시스템(case.ftc.go.kr)> 사건처리안내>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위반유형 : 공정거래법)

### 지정 제외대상

세부 항목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5.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외대상 검토결과	적 합 ( )	부적합 ( )
	* 심의항목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 심의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의견인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표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0)	가. 사업실적 (5)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 이상	5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 ~ 200억 미만	4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 ~ 150억 미만	3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 100억 미만	2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 미만	1
	나. 우수성 (5)	1)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2)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3)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4)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5) 매출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다. 수출 비중 (10)	1)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5% 이상	10
		2)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10%~15% 미만	8
		3)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5%~10% 미만	6
		4)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5% 미만	4
		5)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0% 미만	2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b>2.</b> <b>현장적용성</b> <b>및 기술보호</b> <b>수준</b> <b>(20)</b>	<b>가.</b> <b>현장</b> <b>적용성</b> <b>(10)</b>	1)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을 완료하고, 시장 확장 단계	10
		2)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완료하고, 시장 진입 단계	8
		3) 현 기술·서비스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상용화 추진단계	6
		4)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제작을 완료하고 제품생산 준비단계	4
		5) 현 기술·서비스로 시제품(샘플)을 제작하는 개발단계	2
	<b>나.</b> <b>기술</b> <b>보호</b> <b>수준</b> <b>(10)</b>	1)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등록 특허, 특허전담 인력 및 해외 특허권 보유	10
		2)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등록 특허, 특허전담 인력 보유 및 PCT(국제특허출원) 확보	8
		3)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전담 인력 보유	6
		4)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등록 특허 보유	4
		5)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등록 특허 미보유	2
<b>3.</b> <b>환경산업체의</b> <b>녹색제품 및</b> <b>환경기술</b> <b>활용 가능성,</b> <b>시장성</b> <b>(20)</b>	<b>가.</b> <b>시장</b> <b>전망</b> <b>(10)</b>	1)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10
		2)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8
		3) 주력시장의 높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없음	6
		4)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높음	4
		5) 주력시장의 낮은 성장과 관련시장의 확대 가능성 낮음	2
	<b>나.</b> <b>경</b> <b>쟁</b> <b>력</b> <b>(10)</b>	1)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대 기업	10
		2) 국내 고정거래처 확대 및 해외 고정거래처 확보 기업	8
		3) 국내 고정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확보 기업	6
		4) 국내 신규거래처 확대 및 해외 신규거래처 추진 기업	4
		5) 국내 신규거래처 확보 및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 기업	2

지정기준	세부항목		배점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20)	가. 증가율 (5)	1)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9% 이상	5
		2)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6% ~ 9% 미만	4
		3)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3% ~ 6% 미만	3
		4)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 3% 미만	2
		5) 고용 증가율(최근 2년 평균) 0% 미만	1
	나. 고용 현황 (5)	1)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40인 이상	5
		2)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30인 ~ 40인 미만	4
		3)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20인 ~ 30인 미만	3
		4)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 20인 미만	2
		5)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10인 미만	1
	다. 가능성 (10)	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10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8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6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4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2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20)	가. 발전성 (5)	1)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9% 이상	5
		2)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6%~9% 미만	4
		3)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3%~6% 미만	3
		4)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3% 미만	2
		5) 연구개발(최근 2년 평균) 투자 비율 1% 미만	1
	나. 인프라 (5)	1)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장비 및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5
		2)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및 연구장비를 보유 하였으나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4
		3) 연구개발 전담 인력 및 연구장비를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3
		4)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전담 부서, 연구 장비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2
		5) 연구개발 전담 인력, 전담 부서, 연구 장비 및 독립된 연구시설 미보유	1
	다. 가능성 (10)	1) 기술·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자의 전문성 및 역량	10
		2) 사업 추진 및 경영 활동을 위한 전략수립 구체성	8
		3) 주력사업 확대를 위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 정도	6
		4)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지원사업 수행 여부	4
		5)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	2

가 점 기 준 표

항 목	가 점
1. 환경신기술(NET) 인증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2. 환경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2
3.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기후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로 선정된 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탁월' 등급을 받은 기업,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접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2
4.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 제품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5.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구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접수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1
6. ISO 14001인증, 이노비즈 인증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60일 이상 남을 것	1
7.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외부 검토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판단 확인서 등 제출) * 접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	2

※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은 1회만 인정한다.

현장조사 평가표

평가 지표	평가 의견
<b>1. 신청 사업의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 사업분야 (업종, 업태)</li> <li>○ 주요 생산품 및 주요기술</li> <li>○ 환경 부문 사업 현황</li> </ul>	
<b>2. 제품 생산, 인프라 및 연구시설 보유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생산 여부</li> <li>○ 신청서에 제시된 인프라 (시설 등) 보유 여부</li> <li>○ 인프라 (시설) 활용 (가동) 여부</li> <li>○ 연구시설, 인력 보유 여부</li> <li>○ 주생산품과의 관련 여부</li> </ul>	
<b>3. 기업 혁신역량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의 해외 진출 의지 및 활동</li> <li>○ 현재 추진 아이템 또는 신규 추진 아이템의 발전 가능성</li> <li>○ 해외 진출 및 확대 계획의 구체성</li> </ul>	
<b>4. 지정 전후 기업성과 확인(재지정 신청기업에 한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전후 기업 변화 (시설, 재무, 인력 등)</li> <li>○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후 성과창출 촉진 활동</li> <li>○ 재지정 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li> </ul>	

현장조사 종합의견	적 합 ( )	부적합 ( )
	* 평가지표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의견인 경우

지정심의 평가표

심의항목	평가 지표	심의의견
1. 지정기업 적격성	가. 금융거래 적격 여부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적합
	나. 환경법규 적격 여부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부적합
2. 사업목적 부합성	가. 지정목적 및 사업추진 목적 적합 여부	적합
	나. 환경산업 육성관련 정부정책 연계성	부적합
3. 현장조사 결과	가. 사업, 현장적용, 제품생산 여부	적합
	나. 사업화를 위한 설비·서비스 보유 여부 * 현장조사자에 의한 현장조사표 확인	부적합

지정심의 종합의견	적 합 ( )	부적합 ( )
	* 평가지표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의견인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